#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5976 제안연월일: 2024. 11.

제 안 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 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 과
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제2200218호)	김선교의원	2024.6.7.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(2024. 8. 26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원회 회부
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(제2200840호)	한병도의원	2024.6.24.	
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(제2201101호)	김도읍의원	2024.6.28.	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1722호)	임호선의원	2024.7.15.	

- 가.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(2024.11.2 1.)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- 나.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4.11.21.)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최근 식품의 생산·유통·소비 전반에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 T)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'푸드테크'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.

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,542억 달러(약 665조원)에 달하며,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.

최근 미국, 유럽연합(EU)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,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,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.

이에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시키고, 식품산업과 첨단·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식품산업과 첨단·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법의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

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
- 다.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라.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, 창업 지원, 기술개 발의 촉진,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,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,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).
- 마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- 바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,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, 기술 실증을 위한 지 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사.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(안 제15조)

##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·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푸드테크"란 「식품안전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·유통,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·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 - 2. "푸드테크산업"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·부품·장비·소프트웨어 등을 개발·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.
  - 3. "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"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, 대학·연구기관,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
## 제2장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

-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 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"기본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
  - 2.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
  - 3.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·관리
  - 4.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
  - 5.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
  - 6.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
  - 7.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  - 8.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
  - 9.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) ① 정부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 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「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

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·관리의 범위와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

- 제7조(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) 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,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,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

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,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,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 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, 그 밖의기관을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창업 및 금융 지원)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(이하 "푸드테크사

업자"라 한다)에게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10조(기술개발의 촉진)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
  - 2. 푸드테크 연구개발
  - 3. 기술협력 · 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
  - 4.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
  - 5.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
- 제11조(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)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·관리·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- 제12조(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)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 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, 시장개 착·홍보.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·단체 또는 푸드테 크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·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
- 4.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
-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,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 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지정,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·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14조(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·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

할 수 있다.

- 1.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
- 2. 공동 연구개발.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
- 3.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
- 4.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
- 5.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5조(규제개선의 신청 등) ① 푸드테크사업자,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·연구기관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  -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

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아니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,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7조·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(이하 "규제개혁위원회"라 한다)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 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)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·감독한다.
  -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 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

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
- 2.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·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4장 보칙

- 제17조(보고 및 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·제출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·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1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.
- 제19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 - 1.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
  - 2.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
- 제2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
  - 2.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- 3.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

- 4.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기피하거나 방해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